

수출입품목관리 효율화를 위한 수출입공고제도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rt and Import Public Notification System for Efficiency of Trade Item Management

이제홍(Je-Hong Lee)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목 차

- I. 서 론
- II. 무역관리제도 및 수출입공고 고찰
- III. 분야별 수출입품목의 수출입공고

- IV. 품목관리 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A Study on the Export and Import Public Notification System for Efficiency of Trade Item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hall be studies to the trade control regulation in korea foreign law. this article ar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strategic item and rule of origin. that is, economic profit and nation industries protect have been obtain trade control system.

The trade public notification system achieve efficiency of trade item control and nation industry development and domestic customer protect and trade order for trade system and control scheme. Therefor, The Result of the article is review to protection of domestic

Key Words : public notification system, Strategic Item, Rule of Origin, economic profit

I. 서 론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11위권의 무역량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371,489백만불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56,846백만불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산업별 수출입은 1차산업은 수출이 681,291천불이며, 수입이 11,036,468천불이며, 공산품에 있어서 수출은 35,364,527천불이며, 수입은 25,826,578천불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동년, 동월 기간 동안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반도체의 수출이 2,939백만불, 수입 2,752백만불이며, 자동차 수출이 3,386백만불, 수입이 334백만 불이다. 그리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3,256백만불, 수입이 378백만불 그리고 컴퓨터의 수출이 1,114백만불, 수입이 1,105백만불을 달성하였다. 국가로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의 순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렇듯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출입산업 및 품목별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수출입질서 유지, 국내산업 및 부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서 대외교역 질서를 유지하여야만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무역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거래 전반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록, 신고 등의 형태로 품목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품의 품목관리는 수출입, 대금영수 또는 지급에 대해 대외무역법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승인을 얻도록 구분하고 있다. 자동승인대상품목은 자유화, 제한, 금지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을 얻도록 관리(Negative List System)하고 있으며, 수출입승인 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에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수출입승인품목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수출입공고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기재된 수출입제한 품목(승인대상품목)은 HS 4단위 기준으로, 기존 수출금지품목 6개, 수출제한품목 8개, 수입제한품목 27개였으며, 산업자원부 공고에 의해 수입제한품목이 15개 추가되었다.³⁾ 수출입물품 관리를 원활하고, 각종 법규에 의한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기 위한 각종 품목을 관리하는데, 이들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출입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입공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분야는 전략물자수출입, 원산지규정,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무역제한 및 특

1) [http://stat.kita.net/main/stat/kts.jsp?lang_gbn=kor&cur_url\(2008.5.16발췌\)](http://stat.kita.net/main/stat/kts.jsp?lang_gbn=kor&cur_url(2008.5.16발췌))

2) 대외무역법 제14조 제5항

3)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70호(2007.11.23)

별조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분야중 전략물자수출입과 원산지에 관한 수출입공고 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수출입품목관리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가산업발전 및 국내소비자보호 그리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무역관리제도 및 수출입공고 고찰

1.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제도 성격

무역관리(Trade Control)제도는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접,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이다.⁴⁾ 무역을 관리하는 법인 대외무역법은 물품 등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총괄하는 수출입기본질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다.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대외무역법은 국회입법인 대외무역법과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지식경제부령(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수출입관리 및 수출입물품을 관리하고 있다.⁶⁾ 대외무역법 외에도 대외무역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수출입통관과 관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법, 그리고 수입대금지급과 결제를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 그 외에 기타 무역관계법규로는 수출보험법, 중재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또한 통합공고상에서 개별법으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 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등 57개 개별법에서 수출입물품관리를 하고 있다.⁷⁾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수출, 수입승인이 전에 해당 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한 후 적법하게 수출입할 수 있다.⁸⁾

4)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8, p.2.

5) 대외무역법 제1조

6) 김태인·한상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8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7, p.363.

7) 김창봉·홍길종,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2005, p.219.

8)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8, p.91.

2) 무역관리기관 및 관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 중앙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掌하며,⁹⁾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외무역환경변화에 수출입행정의 신속화와 효율적, 신축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 즉, 시도지사, 물품을 관掌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세청장, 세관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관련조합 또는 협회의 장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¹⁰⁾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에 있어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수출입금지 등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¹¹⁾

2.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출입품목관리의 공고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57여개 개별법에 의한 제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수출입공고는 경제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합공고는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공고이므로, 통합공고 상의 수입규제는 WTO 규정에서도 용인된다.¹²⁾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어떠한 품목을 어떤 제도에 의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 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로서 개개의 품목에 관한 관리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품목리스트이며, 개별품목들에 대한 수출입의 제한 여부를 알려주는 종합적인 계획이다.¹³⁾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대상물품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수출입지역의 한정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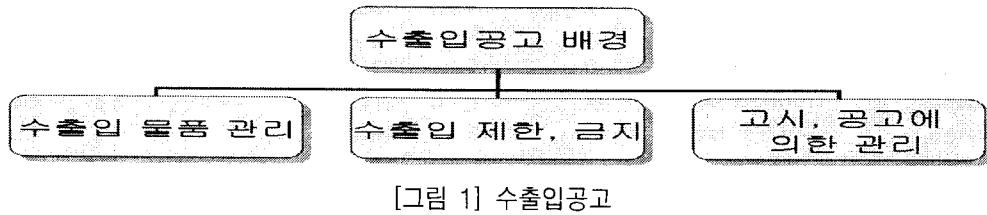
9) 정부조직법 제37조

10) 대외무역법 제52조 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

11) 대외무역법 제14조

12) 김석철·이제홍·박희주, 최신현대대외무역법해설, 청목출판사, 2005, p.111.

13) 김재원, 대외무역법, 박문각, 2006, p.74.



이와 같은 수출입공고¹⁴⁾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승인·신고·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공고에는 ① 헌법에 의하여 제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 의무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 ②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정, 고시한 물품 ③ 고역상대국과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④ 방위산업용원료, 기재와 항공기 및 부문품, 과학기술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등이다. 이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출입승인면제 대상물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의 한정 등이 포함된다.

2) 수출입통합공고

통합공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¹⁵⁾, 대외무역법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⁶⁾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¹⁷⁾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 아니면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수출입신고하여 수출입을 이행하면 된다.¹⁸⁾ 요건확인품목은 HS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¹⁹⁾ 현재 약 24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개별행정법(49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고상에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14) 수출입공고 제1조(대외무역법 제11조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됨)

15) 대외무역법 제12조

16) 통합공고 총칙 제1조

17)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함

18) 전순환, 대외무역법, 상계서, p.94.

19) 통합공고 총칙 제4조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²⁰⁾

또한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 공고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3) 품목표시방법 및 분류방법

우리나라는 1967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수출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품목별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상품을 이러한 외국상품과 경쟁시킴으로써 국내산업의 채질을 개선하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현재 수출입 공고상의 품목은 수출제한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행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입승인품목은 전혀 없으며,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제한품목은 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다.²¹⁾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²²⁾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는 1971년까지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1971년도 상반기부터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 방식이 사용되어 오다가, BTN의 명칭인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으로 변경되었다.

1977년 상반기부터 CCCN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그러나 CCCN 방식이 미국 등의 미채택국과 채택국간에 무역교섭을 위한 공통된 상품분류기반이 없어 수출입통계 등의 비교에 애로가 많고, 또한 관세·보험·운송 등에 있어서 상품분류의 공통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 부담이 되며, 상품구조의 변화 및 과학기술발전 등에 부응한 CCCN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²³⁾ 1988년부터 현재까지 HS 방식을 채택·사용하고 있다.

3. 수출입공고상 품목관리

현재 수출입공고상의 품목은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수출승인품목) 및 수입제한품목(수입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²⁴⁾ 수출입공고상에 게시된 수출금지품목은 수출이 금지되는 고래고기, 화강암,

20) 수출입공고 제2조

21) 김석철·이제홍·박희주, 상계서, p.118.

22) 수출입공고 총칙 제3조

23) 전창원, 표준온·오프라인 무역실무, 무역연구원, 2004, pp.401-402.

사암, 개의 생모피·모피·모피제품 등이 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사과, 배, 규사, 자갈, 대리석, 견사, 승용 및 화물차 등이 수출승인대상물품이다. 그리고 수입승인대상 물품인 수입제한품목에는 항공기 및 동 부분품 등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강재 수입요령이 수출입공고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철강재의 경우 수입승인 대상물품으로서 사전 수입신고에 따라 자동승인이 되도록 규정되었다.²⁵⁾

수출제한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²⁶⁾ 수출공고상에서 수출제한품목인 경우 동 공고사의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다.

외화회득용원료 및 외화회득용제품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승인할 수 있지만,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과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을 수출입할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²⁷⁾ 그러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또는 항공법에 의한 경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III. 분야별 수출입품목의 수출입공고

1.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1) 전략물자 중요성

전략물자(Strategic Item)²⁸⁾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와 기술로서, 일반산업용장비 및 물자로서 군수품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 군수물자, 핵관련 물질 및 설비, 미사일 관련 물자 및 기술,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을 말한다.²⁹⁾ 아울러 무기 또는 무기

24) 수출금지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 1에 게기, 수출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 2에 게기, 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 3에 게기

25) 전순환, 대외무역법, 상제서, p.99.

26) 수출입공고 제4조 및 제6조

27) 수출입공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28)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의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수출공고”를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로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총칙 제1조).

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민수용 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³⁰⁾

이와 같은 전략물자의 중요성 때문에 수출관리를 위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을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등에 이용 가능한 물자·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³¹⁾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전략물자 즉,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다. 2004년 12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하여 그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²⁾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공고를 통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쟁수행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성국가에 대한 수출제한하기도 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핵무기, 생화학, 미사일 등이 적성국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량파괴무기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략물자는 제1종 전략물자³³⁾와 제2종 전략물자³⁴⁾로 구분한다. 제1종 전략물자는 여러 회원국들로 구성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다. 그리고 제2종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이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과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이다.³⁵⁾

2)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³⁶⁾ 통합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³⁷⁾

29) 윤주한, 최신대외무역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5, p.191.

30)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 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228.

31) 박민, 주요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2006, p.4.

32)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관리가이드, 2005, p.9.

3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2조의1

34)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2조의2

35)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36)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

37)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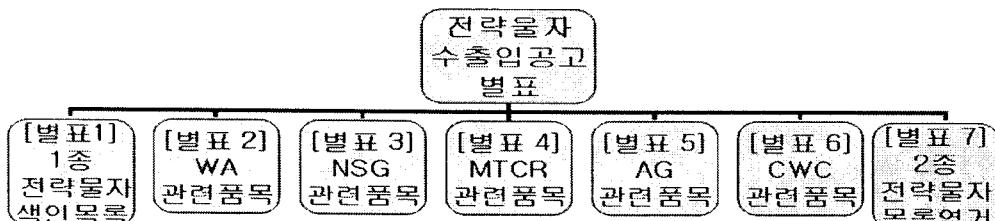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사전판정 및 수입증명 등에 관해 적용할 법령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원자력법, 방위사업법에 따라 운영된다.³⁸⁾ 아울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시에는 품목, 기술 및 규격과 수출이 제한지역과 수출허가면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³⁹⁾

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통제품목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⁴⁰⁾ 규정에 따라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그룹, 호주그룹 및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와 관한 협약⁴¹⁾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제는 별표2 내지 6에 게기된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별표 4에 게기한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⁴¹⁾

- 수출통제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표에 게재되어 있음



WA(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체제)(별표 2)(재래식 무기)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 그룹)(별표 3)(핵 무기)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System: 미사일 기술통제체제)(별표 4)(미사일)

AG(Australia Group: 호주그룹)(별표 5)(생화학 무기)

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 무기 금지 협약)(별표 6)(생화학 무기)

[그림 2] 전략물자수출입통제품목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체제는 대량파괴무기의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수출할 때 우려용도로 공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효과적인 체제인 수출통제협의체가 결성되었다. 이는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전략물자가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통제물품

38)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1조의 2

39)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

40) 제39조 제1항1호

41) 전략물자·기술수출통합공고 제16조의 ①, ②

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업체가 위반하거나 수입후 우려용도로 전용하는 등 사례는 부적격거래자에 등재하고 회원국이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⁴²⁾

수출통제품목은 대량 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⁴³⁾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표 7에 열거되어 있다. 또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게재한 품목이며⁴⁴⁾, 1종 전략물자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이며, 2종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

〈표 1〉 제1종 전략물자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시행령 제39조 제1항)으로 전략물자 수출 입공고 별표 1-6에서 열거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	CWC(화학무기금비협약)
개요	재래식 무기 및 산업겸용 장비	원자력 전용 및 산업 겸용장비	미사일, 무인항공기 및 산업겸용장비	화학생물무기 원재료 및 제조용 설비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
	<일반산업용물자>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센터 및 레이저,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장비 및 기술	<원자력 전용용품> -원자로 및 부속장비 -핵연료가공용 품목 등 설계, 건설기술	완성로켓, 추진체 부품장비, 핵원로 물질	화학무기 전구체, 재조설비 및 기술, 계기항법장치, 항공전자, 컴퓨터, 시험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1,2,3종 화학물질, -독성화학물질 및 원료,
통제대상품목	<방산물자> -무기, 탄약 -군용차량, 전자장비 부품	<일반산업용 물자> -산업용 장비 및 소재, 동위원소처리장비 -시험, 측정장비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무려가 있는 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 문반체계를 개발하고 있거나 있는 국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무려가 있는 국가로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무려가 있는 국가	-1종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수출금지 -2종은 CWC 가입국 미외 수출금지
수출제한지역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무려가 있는 지역	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무려가 있는 국가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	CWC(화학무기금비협약)

자료 : 연구자 작성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공고

1) 원산지 제도

원산지(origin of goods)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

42)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관리가이드, 2005, p.15.

4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44) 별표1은 1종전략물자 색인목록, 별표 2에는 WA관련 품목, 별표 3에는 NSG 관련품목, 별표 4에는 MTCR 관련품목, 별표 5에는 AG관련품목, 별표 6에는 CWC 관련품목의 규격 및 성능열거, 별표 7에는 2종전략물자 목록열거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⁴⁵⁾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⁴⁶⁾”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와 같은 원산지제도가 필요한 요인으로는 첫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둘째,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한다. 셋째, 덤픽방지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넷째, 현재 수출입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있는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⁴⁷⁾

원산지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표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⁴⁸⁾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⁴⁹⁾은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 및 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⁵⁰⁾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에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⁵¹⁾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⁵²⁾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⁵³⁾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 한다.⁵⁴⁾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

45)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52조)

46) 대외무역법 제23조의 제1항

47) <http://www.moccie.go.kr/korean/policy/trade/orgin/orgin1.asp>

48)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

4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원산지 규정은 법제5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

5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3조

5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5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5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

54)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산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⁵⁵⁾로 보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한나라에서 제조한 상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경우의 물품으로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하여 당해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⁵⁶⁾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실질적 변형이 행해지는 경우 세번변경기준(HS 6단위변경)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주요 부품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하며,⁵⁷⁾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요 부품이나 주요 공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용하는 부가가치비율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가공공정기준은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 생산되는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에 주요부품(공정)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⁵⁸⁾ 그리고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 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⁵⁹⁾ 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단순한 가공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⁶⁰⁾

현재, 수입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별표6-1에 게기된 HS4단위 기준 674개 품목(농수산물 171, 공산품 503개)을 공고하고 있다.

55)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1항

5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2항

57)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4항 및 제6항

5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5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5항

60)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표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별표 6-1)(실례)

HS NO	품명	판정기준 및 예
0102	소	출생국을 원칙으로 함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6개월미상 사육된 경우, 사육국이 원산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국이 원산지)
0103	돼지	출생국을 원칙으로 함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2개월미상 사육된 경우, 사육국을 원산지,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 출생국을 원산지로 함)
0206	식용설육	소,돼지,면양,산양,말,등나귀,노새와 새끼의 것으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혀,꼬리,족)
0301	활어	
0701, 0702, 0703	감자,토마토,양파,족파, 마늘와 기타 파속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0805	감귤류의 과실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오렌지,감귤,레몬,라임)
1002- 1101	호밀,보리,커리,옥수수, 쌀,수수,메밀,밀가루 등	쌀을 벼를 포함하며, 현미,멥쌀,찹쌀 등
1603	육,마류,간자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액스와 허	
1704	설탕과자	백색초코렛 포함,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 : 초임검, 감초엑스, 컨디류, 캐러멜
2009	과술, 채소쥬스	포도즙 포함,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오렌지쥬스,감귤쥬스,레몬쥬스,토마토쥬스,파인애플쥬스 등)
3703- 3704	사진인화지, 판지 및 직물, 사진플레이트, 필름	3701은 감광성 있고, 노출하지 아니한 것 3704는 노출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
8509- 8510	가정용 전기기기 면도기와 미발기, 모발제 거기	전기난방기,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커피분쇄기, 얼음분쇄기 등
9501	여린이용 바퀴 달린 완구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인형용 차, 보행기
9605	개인용 여행세트	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함
9610	식판과 보드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함, 틀의 유무를 불문, 흑판
9613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 라이터	기계식 또는 전기식 여부를 불문 및 미들의 부분품(풀과 심지는 제외)

IV. 품목관리 방안 및 결론

현재 국가간의 교역은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정부에 의해 일정부분 통제·간섭하는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정책은 대체로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대외무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역정책상 조치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동되는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지급, 경쟁력있는 국가로부터의 자의적인 수입수량규제, 보호주의적 목적의 원산지규정이나 제품규격 규제의 남용, 반덤핑제소의 남용, 기타 행정절차상의 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⁶¹⁾

따라서 무역관리는 무역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무역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의해 일정부분 무역을 제한하는 소극적 간섭을 통하여 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개방화체제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원산지에 관한 문제이고, 또한 자국의 안보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물자에 대한 품목관리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커다란

61) 송희영, WTO체제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한계, 한국관세학회지 창간호, 한국관세학회, 1998, p.5.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다.

1. 효율적 품목관리

우리나라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⁶²⁾ 지식경제부 장관에 의해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수출입금지 등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과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⁶³⁾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물품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적인 수출입 승인대상품목을 수출입공고에 고시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이외의 개별행정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입 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수입요령을 시행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 받은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⁶⁴⁾

1) 수출입 승인

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⁶⁵⁾ 이와 같이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이 승인대상 물품이며, 이러한 물품 등은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 고시로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한 수출입승인의 권한을 위임, 위탁규정에 따라 승인대상 품목별로 관계행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즉, 수출입승인기관은 수출입공고에 승인대상 물품별로 지정·고시된다.

2) 전략물자 품목관리 방안

전략물자 수출입관련 판정·허가업무에 있어 지식경제부와 서전판정 수탁기관이 전략물자무역정보

62) 대외무역법 제3조 제1항

63) 대외무역법 제14조 제5항

64) 대외무역법 제15조

65) 대외무역법 제14조 제1항

센터를 중심으로 판정·허가에 필요한 수출통제 기준설정, 판정, 허가, 사후관리 관련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전략물자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다. 수출통제 기준설정 업무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통제품목 및 기준변경 등의 이슈 발생시 해당 품목 소관부처가 내용을 검토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 공포하는 업무이다.

전략물자수출입관리와 관련하여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 기관이 4개가 존재하고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규정이 각 법률마다 상이하며, 제재수준 또한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경미하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준수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⁶⁾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1종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과 허가절차를 거쳐야하며, 제2종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계약시 최종수입국과 최종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수출품이 첨단·고도화되고 세계시장에서 역할의 증대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기업들이 자발적인 수출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자율적 수출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표준자율관리규정의 이행을 하고 아울러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맞추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공개하고, 인터넷 검색 및 자체판정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간편한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신청 및 조회, 전자문서로 판정, 허가, 기록축적 및 정보공유 등이 가능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수출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에의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공고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물자 판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⁶⁷⁾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수출통제관리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⁶⁸⁾

전략물자통제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정절차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 생산업자에 대해 판정, 인허가, 신고, 등록, 감독, 사후보고 의무, 사후관리 등의 행정조치가 부과되어야 한다.⁶⁹⁾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경제교류 및 물자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전략물자의 반입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은 자국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서는 국가안보상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제품이나 기술이 부가된 제품이 북한으로 반입될 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66) 이희용 외 3,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 무역학회, 2007, p.108.

67) 최승환,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와 남북경협의 운영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1호, p.217.

68)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과 제57조-제61조

69)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2007, p.381.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통제 외에 자국의 기술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재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즉 첨단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비핵산 민감품목의 확산 및 이전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⁷⁰⁾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략물자수출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반출관문인 관세청에 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전략물자동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IT 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표준을 수용한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⁷¹⁾

3) 원산지 관리 방안

각국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특정국가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특히 수입국들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을 이용하는데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물품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또는 수량제한, 관세할당 등의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통계적인 목적, 물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위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주로 이용된다. 반면 특혜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가 어떤 기준을 충족했을 때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인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협정을 맺은 회원국간 거래되는 물품이 특혜관세 조치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⁷²⁾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농산물 169개, 공산품 484개로 전체품목은 1,24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원산지표시방법⁷³⁾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⁷⁴⁾ 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요청과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⁷⁵⁾

70) 박만, 주요국 전략물자수출통제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2006, p.12.

71)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 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238.

72)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p.3.

73) 대외무역법 제75조-80조

7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될 때 수입물품원산지표시방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⁷⁶⁾ 아울러 원산지 확인은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고 공고한다.⁷⁷⁾ 따라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⁷⁸⁾

2. 결론

수출입공고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 여부를 규정한 종합관리체계이다. 이와 같은 수출입공고는 국제간 경제협력과 국내산업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의 품목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이의 수출입공고에 관한 주요 분야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는 적성국가로 대량살상무기, 또는 핵심기술의 국외유출로 인한 국내 안보상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제한, 승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주요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을 두어 테러지원국(이란, 리비아,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 등)에 미국산전략물자의 기술 편입이 10%초과할 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라 북한에 물자가 반출될 때, 미국산전략물자의 편입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원산지규정 및 표시에 대한 제도는 국내산업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검사, 확인제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 관리는 시도지사, 세관장,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국내유통중인 물품의 검사권한, 원산지확인에 대한 검사권한, 원산지 판정 및 이의제기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상의 원산지 품목을 관리하는 기관은 새로운 기구 또는 부서를 신설하여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제한을 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과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 등의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할 때는 고역상대국과의 협의에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예 광우병, 조류독감 등)

75)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규정 제84조 제3항

7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77)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

78)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넷째, 특정국(중국)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각각의 협회나 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상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공고는 국민생활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무역관리제도이기 때문에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석철 · 이제홍 · 박희주, 최신현대대외무역법해설, 청목출판사, 2005, p.111.

김재원, 대외무역법, 박문각, 2006, p.74.

김창봉 · 홍길종,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2005, p.219.

김태인 · 한상현,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8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7, p.363.

남풍우 · 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p.3.

박만, 주요국 전략물자수출통제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2006, p.12.

송희영, WTO체제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한계, 한국관세학회지 창간호, 한국관세학회, 1998, p.5.

윤주한, 최신대외무역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5, p.191.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 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238.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2007, p.381.

이희용 외 3,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p.108.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8, p.91.

전창원, 표준온 · 오프라인 무역실무, 무역연구원, 2004, pp.401-402.

최승환,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와 남북경협의 운영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1호, p.217.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관리가이드, 2005, p.9.

[http://stat.kita.net/main/stat/kts.jsp?lang_gbn=kor&cur_url\(2008.5.16발췌\)](http://stat.kita.net/main/stat/kts.jsp?lang_gbn=kor&cur_url(2008.5.16발췌))

<http://www.mocie.go.kr/korean/policy/trade/origin/origin1.asp>